제2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
2006.9.4～9.15(12일간)

專門委員 檢討報告

□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

企劃行政委員會

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書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8월 28일
나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29일

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■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(안 제2조).

5. 검토의견

■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음.

■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,

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

고 있음.

■ 이에 우리도에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하한선인 10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, 2005년말 현재 19세이상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때 11,260명정도가 되며, 개정전 25,000명에 비해서는 1/2정도가 되겠습니다.

※ 개정전(대통령령) 20세이상 주민수가 110만이상 150만미만일때 연서주민수 25,000명

※ 개정후(조례) 19세이상 주민수의 100분의 1이상 연서
1,126,309명('05.12말 19세이상 인구수)×0.01 = 11,263명 정도

■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,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남발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1999년 8월 31일 도입된 이래 우리도에서는 2005년 「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」1건이 있었음을 사례로 볼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.

붙 임 :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